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정관개정안 보고

□ 추진근거

- 행정자치부 **「지방 출자 출연기관 예산집행 지침」**(행정자치부 재정관리과, 2015.2.26.)
- 서울특별시 **「출자·출연기관 운영관련 제도 개선계획」**(공기업담당관-4799, 2016.4.29.)
-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제3항

□ 개정사유

○ 「출자·출연기관 운영관련 제도 개선계획」에 따라 당연직 이사 운영제도에 과한 정관 내용 개정

주요골자

○ **제16조(임직원의 보수**) 중 예산의 범위내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수당과 여비 지급 시 업무 관련성 있는 공무원에게 지급 금지 구문 삭제

• 추진목적

- 당연직이사의 이사회 참석률 제고로 市-기관간 소통·협력 증대
- 기관 비상임이사(당연직이사 포함)의 이사회 참석수당 현실화
- 지급대상 : 이사회에 참석하고 의결권을 행사한 당연직 이사
- 지금기준 금액 : 300천원/회
- **조치사항** : 규정 정비 등
 - 당연직이사의 이사회 참석수당 지급금지 규정 정비 및 이사회 운영경비 예산 재조정 등

□ 개정절차 및 추진일정

○ 시의회 상임위원회 보고 : 2016년 6월 중

○ 서울의료원 이사회 의결 : 2016년 7월 중

○ 이사회 결과에 대한 서울시장 승인 : 2016년 7월 중

○ 서울의료원 정관 개정 완료 : 2016년 7월 중

붙임1. 신 구조문 대비표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(안)
제16조 (임직원의 보수) ① 의료원의 임원 및 직원	제16조 (임직원의 보수) ① 의료원의 임원 및 직원
은 보수규정에서 정하는 보수와 기타 직무수행에	은 보수규정에서 정하는 보수와 기타 직무수행에
따르는 실비를 받는다.	따르는 실비를 받는다.
② 비상임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.	② 비상임위원에게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는다.
다만, 예산의 범위내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	다만, 예산의 범위내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
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<u>이 경우</u>	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<u>〈삭제〉</u>
업무 관련성 있는 공무원에게는 지급하지	
아니한다.	
③ 퇴직금관리는 보수규정에 따라 산출한	③ 퇴직금관리는 보수규정에 따라 산출한
금액을 적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	금액을 적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